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복지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보상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추가 (안 제3조)
- 나. 참전명예수당 5만원 인상 : 월 10만원 → 월 15만원 (안 제4조제1호)
- 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월 5만원 (안 제4조제2호)
- 라. 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관한 근거 보완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통보한”을 “통보한 자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만원”을 “1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제5조제1항 전단 중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참전명예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 지급 대상자

[별지 제1호서식]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참전명예수당	성명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참전유공자의 성명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 복지수당 지급을 ([] 신청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급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나. 복지수당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변경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계좌 변경)	

[별지 제2호서식]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30일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 미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및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 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u>참 전유공자</u> 로 한다. 다만, 참전유 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u>통보한</u> 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	----- 참 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의 배우자-----.
제4조(지원사업)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u>실시하여야</u> 한다.	제4조(지원사업)	-----	----- 통보한 자와 「구미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 당 월 <u>10만원</u> 지급 <u><신 설></u>		1.	-----	----- 예산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 다.
2. · 3. (생 략)		1.	-----	--- <u>15만원</u> ----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참전 명예수당</u> 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에게 복지수당 월 5만원 지급	
		3. ·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u>참전 명예수당</u>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② (생략)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월 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 설>

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수당-----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
----- 수당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

<u>제7조</u> (생략)	<u>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u> <u>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u> <u>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u> <u>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u> <u>2. 그 밖의 부적격자가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u>제8조</u> (현행 제7조와 같음)
------------------------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
·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인상 (안 제4조)

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신설 (안 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급금액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급금액에 대하여 2023년 1월부터 지급함을 전제로 5년간 소요비용을 추산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세출	합계	2,582,400	2,453,280	2,332,080	2,215,800	2,105,280	11,688,840
	참전명예수당						
	소계	2,222,400	2,111,280	2,006,880	1,906,800	1,811,280	10,058,640
	도비	600,000	570,000	541,800	514,800	489,000	2,715,600
	시비	1,622,400	1,541,280	1,465,080	1,392,000	1,322,280	7,343,040
	배우자 복지수당						
	시비	360,000	342,000	325,200	309,000	294,000	1,630,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합계		2,760,000	2,622,000	2,492,400	2,368,200	2,250,000	12,492,600
세입	도비	600,000	570,000	541,800	514,800	489,000	2,715,600
자체수입	시비	2,160,000	2,052,000	1,950,600	1,853,400	1,761,000	9,777,000

5. 부대의견

가. 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실질적 보상을 확대하여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

나. 타 지자체에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추세임

다.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전입·전출과 사망자가 증·감 될 경우 소요액도 달라질 수 있음

6. 작성자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이수웅 (054-480-510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참전명예수당 인상에 따른 소요비용

참전유공자 대상 인원을 2023년 1,000명을 기준으로 연간 5% 감소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 참전명예수당 산출내역

- 2023년 : 1,000명 × 월 200,000원 × 12개월 = 2,400,000,000원
- 2024년 : 950명 × 월 200,000원 × 12개월 = 2,280,000,000원
- 2025년 : 903명 × 월 200,000원 × 12개월 = 2,167,200,000원
- 2026년 : 858명 × 월 200,000원 × 12개월 = 2,059,200,000원
- 2027년 : 815명 × 월 200,000원 × 12개월 = 1,956,000,000원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비용

복지수당 대상 인원은 2023년 600명(참전유공자의 60%)을 기준으로 연간 5% 감소 인원으로 산정하였음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복지수당 산출내역

- 2023년 : 600명 × 월 50,000원 × 12개월 = 360,000,000원
- 2024년 : 570명 × 월 50,000원 × 12개월 = 342,000,000원
- 2025년 : 542명 × 월 50,000원 × 12개월 = 325,200,000원
- 2026년 : 515명 × 월 50,000원 × 12개월 = 309,000,000원
- 2027년 : 490명 × 월 50,000원 × 12개월 = 294,000,000원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안 진 희
	담 당	이 정 화
	담 당 자	이 수 웅 (480-5103)